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의의원 : 김동훈, 조성대, 김상수,
이정애,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김영실, 이진환

1. 제안 이유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 민관 협의체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수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함. (안 제4조)

라.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기능 및 회의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바. 공중케이블 정비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5. **관련 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시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된 주요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이 시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리·시행하는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예 산 수 반 사 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 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 재정수반요인 : 협의회 참석수당

「남양주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협의회의 회의)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 협의회 구성 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연2회 예정)로, 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붙 임 관 련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3.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범위와 설비등의 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등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설비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협정이 해지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6. 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비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와 방법은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신설 2014. 10. 15., 2017.7. 26.>

⑥ 삭제 <2015. 12. 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제35조의2(공중케이블 정비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이하 이 조에서 “공중케이블”이라 한다)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 26., 2018. 12. 11.>

1.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3.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

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